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3나221654 판결 [건물명도 등]

---

## 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3나221654 판결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. 9. 21 선고 2022가단1353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 2024. 11. 19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**제1심판결**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. 9. 21. 선고 2022가단1353 판결

## 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,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중 별지2 도면 표시 6, 7, 3, 4, 5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1)부분 25m<sup>2</sup> 및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7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135m<sup>2</sup> 지상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'202가단12421호'를 '2022가단12421호, 이하 "이 사건 관련소송"이라 한다'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'아.항'을 '아.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하고 있었는데, 제1심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.'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'아.항' 다음에 '자.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,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고,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 및 협의에 의하여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22. 7. 14. 잔금을 지급하려고

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B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9,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 B이 패소하였고, 이에 피고 B이 항소(대전지방법원 2023나221647호)하였으나, 2024. 8. 10.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'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'이 법원'을 '제1심법원'으로 고쳐 쓰고, 같은 면 제13행의 '변론 전체의 취지' 앞에 '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'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'철거할 의무가 있다' 다음에 '(한편,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철거의무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9,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이 피고 B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, 오히려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의 계약금은 피고 B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'를 추가한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강애란**

**판사임수정**

**판사유현정**

**별지**